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1. 13 선고 2019가단108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복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박라영

변 론 종 결 2020. 11. 4.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와 소외 주식회사 F 사이에 2018. 3. 8. 체결된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77,358,49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와 소외 주식회사 F 사이에 2018. 3. 8. 체결된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49,988,41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D와 소외 주식회사 F 사이에 2018. 3. 8. 체결된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45,806,87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E와 소외 주식회사 F 사이에 2018. 3. 8. 체결된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16,916,23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77,358,490원, 피고 C은 49,988,410원, 피고 D은 45,806,870원, 피고 E은 16,916,2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F에 2018. 2. 28.까지 철강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가단2953호로 F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3. “F는 원고에게 152,402,525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8. 2. F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단1844호로 F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7. “F는 B에게 112,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 C은 2015. 5.경부터 2018. 2. 28.까지 F에 금형 부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74,172,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차204호로 임가공료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8. 3. 21. “F는 C에게 74,172,8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보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정보는 2018. 3. 23. F에 송달되어 2018. 4. 7. 확정되었다.

4) 피고 D는 2017. 4. 1.부터 2018. 2. 28.까지 F에 금형가공을 하여주고 대금 62,5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차200호로 금형가공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8. 3. 21. “F는 D에게 62,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보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정보는 2018. 3. 23. F에 송달되어 2018. 4. 7. 확정되었다.

5) 피고 E는 2016. 11. 30. F에 금형설계를 하여 주고 그 대금 2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F의 채권양도

1) F는 2018. 3. 8. 피고들과 사이에 “F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채권 2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 B에게 110,000,000원, 피고 C에게 71,000,000원, 피고 D에게 65,000,000원, 피고 E에게 24,000,000원으로 각 분할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이 F로부터 채권양도사실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G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2018. 3. 13. F는 G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1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채권은 F가 G으로부터 도급받은 금형제작대금채권인데 F는 금형을 완성하지 못하였고, 2018. 4. 18.경 F와 G 사이에서 “2018. 4. 18. 시점 F가 제작한 전 금형을 인수인계 완료하고, 기성금은 190,070,000원으로 합의한다. F는 G에게 금형도면/가공데이터 및 관련자료 일체를 4. 20.까지 인수인계 완료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 및 피고들과 G 사이의 소송

1) 피고들은 G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단1211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G은 “F로부터 설계도면 등을 교부받지 못하여 2,136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F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2. 12. 위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G의 항변을 기각하고 F의 G에 대한 채권 190,070,000원을 피고들이 각 양도받은 금액의 비율로 배분하여 “G은 B에게 77,358,490원, C에게 49,981,370원, D에게 45,757,592원, E에게 16,895,11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G이 위 항변이 기각된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14. 항소가 기각되었다.

2) G은 위 판결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판결금 원금을 포함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 역시 G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단230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보다 피고들의 채권양도통지가 G에게 먼저 도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8, 9, 15, 19호증, 을 제1, 2, 3, 4, 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F는 원고에 대하여 원금 기준 152,402,525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F의 G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들에게 각 양도하여 주었고, F는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이미 G으로부터 채권변제를 받았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F는 이 사건 채권 외에도 F의 소재지인 경주시 H에 다수의 금형가공기계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G 외에 다른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F는 무자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F의 실질 대표인 I이 암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F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F가 보유하는 재산(G 등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채권, 스틸금형 프레스기 등의 물건 등)을 나누어 주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원고 역시 F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는바, F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원고가 F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152,402,525원)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F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소외 회사의 무자력

위 인정근거 및 갑 제8, 10,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J의 적극재산은 G에 대한 이 사건 채권 190,070,000원 외에 1년치 자동차세 합계 846,820원인 자동차 2대(K, L) 뿐인 반면, 소극재산은 M에 대한 채무 172,500,000원, NOPQ에 대한 채무 합계 20,993,451원, R에 대한 채무 18,464,427원, S에 대한 채무 19,937,268원, T은행에 대한 카드연체대금채무 932,093원, 대출금 채무 5천만 원4,500만원2,200만 원, U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2억 5천만 원,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600만 원3,340만 원 합계 769,227,239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F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을 제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적극재산 외에 F가 소외 주식회사 V에 대한 대금채권(내지 위 회사에 납품할 스틸금형 27벌), 소외 주식회사 J에 대한 대금채권, 프레스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는 주식회사 W, X, Y, Z,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위 각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는 위 소극재산에 고려하지 않았다), 그 채무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위 주식회사 V에 대한 대금채권(내지 위 회사에 납품할 스틸금형 27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프레스기계 역시 그 가액은 F의 AB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무액(위 AB에 대한 채무 역시 소극재산에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F가 주식회사 J에 대하여 256,300,000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나(위 주식회사 J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서를 송달받은 후 “J은 F에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서를 제출하였다.을 제20호증이다) 위 채권액을 적극재산에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F의 소극재산 액수에 비추어 보면 F는 여전히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7,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는 폐업을 염두에 두고 채권자들을 위하여 F의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재산분배에서 다른 일반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배제되었음은 분명한바(특히 F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원금 250,000,000원의 채무는 2019. 12. 31.까지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다), 결국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F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F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입증한 증거가 없다.

4)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와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77,358,49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와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49,988,41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D와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45,806,87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E와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16,916,23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는 77,358,490원, 피고 C은 49,988,410원, 피고 D은 45,806,870원, 피고 E은 16,916,2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 별지목록 】

채무자 주식회사 []
[]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
[]에 대하여 금형제품을
납품하고 가지는 27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데, 주식회
사 []가 2018. 3. 8 주식회사 [], [], [], []과
사이에 주식회사 []에 대해 1억 1,000만 원, 피고 []에 대해
7,100만 원, 피고 []에 대해 6,500만 원, 피고 []에 대해 2,400만
원씩 각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

--- 이 상 ---